

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임실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4. 1. 16.

임실군의회의회장



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제 안 이 유

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탄력적 대처를 위하여 정책지원관의 사무를 의사팀으로 분장하고 전문위원의 직급을 조정하고자 함

2. 주 요 내 용

- 가. 의사팀의 사무분장 개정(안 제2조제4항)
 - 정책지원관의 사무를 의사팀으로 분장
- 나. 전문위원의 직급 변경(안 제3조의 별표)
- 다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 - 맞춤법 오류(띄어쓰기), 다듬어지지 않은 표현 등

3. 참 고 자 료

- 가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입법예고 : 2024. 1. 16. ~ 2024. 1. 22. (6일간)
- 라. 기 타

- 1) 일부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
- 2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및 관련 법령

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의정팀,의사팀”을 “의정팀, 의사팀”으로, “지방행정주사,지방농업주사,지방시설주사,지방녹지주사”를 “지방행정주사, 지방농업주사, 지방시설주사, 지방녹지주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“청사,장비,물품수급 및 홈페이지 관리”를 “청사, 장비, 물품수급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7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4조의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

7.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8호를 제6호로 한다.

“별표”를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사무과장) ① (생략) ② 의회사무과에 <u>의정팀,의사팀</u>과 의회홍보팀을 두며, 각 팀장은 <u>지방행정주사,지방농업주사,지방시설주사,지방녹지주사</u>로 한다. ③ 의정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 1. ~ 5. (생략) 6. <u>청사,장비,물품수급 및 홈페이지 관리</u>에 관한 사항 7. ~ 10. (생략) ④ 의사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<u>7.</u> (생략) 8. (생략) ⑤ (생략) 제3조(전문위원) ① (생략)	제2조(사무과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의정팀, 의사팀</u> ----- - <u>지방행정주사, 지방농업주사, 지방시설주사, 지방녹지주사</u>----- -----. ③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청사, 장비, 물품수급</u>----- ----- 7. ~ 10.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6.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4조의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</u> <u>7.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u> <u>5.</u> (현행 제7호와 같음) 8. (현행과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 제3조(전문위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 1. ~ 5. (생략) <u>6.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4조의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</u> <u>7.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u> <u>8.</u> (생략)	②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<u><삭제></u> <u>6.</u> (현행 제8호와 같음)
---	--

「별표」

전문위원별 직급(제3조관련)

위원회명	직 위	직 급	비고
운영행정위원회	전문위원	지방행정사무관 ·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	
농업복지위원회	전문위원	지방행정사무관 ·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· 지방사회복지사무관	

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-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

□ 『지방자치법』

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)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
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, 직급·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3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)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·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
제104조(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) ① 사무처장·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사무직원의 임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「지방공무원법」을 적용한다.

□ 『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』

제4조(정책지원관)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.<신설 2022.1.12>

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,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
2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

4.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5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
6.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

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제5조(직원의 정원) 임실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는 「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로 정한다. <개정 2011.03.31> <개정 2022.01.12.>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